

●**제주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30호**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, 이사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**전파법 위반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(청문실시)**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09월 01일
제주전파관리소장

전파법 위반(정기검사 불응) 무선국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

1. 대상 무선국

시설자명	허가번호	무선국명	호출명칭	주 소
박*술	42-2021-80-0000040	제77호창호	901호창호	제주시 한림읍 일주서로 5**7-*1
이*석	42-2022-80-0000037	제주바다호	997제주바다호	제주시 현사길 *2
강*석	42-2022-80-0000042	제11동진호	990제11동진호	제주시 우평로 *0, 10*동 *04호
이*환	42-2020-80-0000001	천삼한일호	955천삼한일호	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1**3번길 1*-*

2. 근거법령: 전파법 제24조(검사)

전파법 제72조제2항(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)

3. 위반사항: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무선국 운용정지 1월

5. 청문일시: 2026. 9. 29. (화) 15 : 00

6. 청문장소: 제주시 애월읍 도치돌길 385 제주전파관리소 소회의실 (2층)

7. 참고사항

- 가.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“의견제출서”를 제출 할 수 있으며, 청문(의견제출)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처분절차 진행 중이라도 검사를 이행하면 처분이 면제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(☎064-740-2812, FAX 064-740-282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